|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3장　전자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제5장　전자상거래의 촉진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1.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지칭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류 상품과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뉴스정보,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 출판 및 문화상품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신(新) 업태를 발전시키고 비지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 신용 체계를 구축하며 전자상거래의 혁신적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질적 발전 촉진,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의 욕구 만족, 개방형 경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을 권장한다. 2. 국가는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을 평등하게 취급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자원(自願), 평등, 공평,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률과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국무원 유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발전 촉진, 감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현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관련 부서의 직책을 확정할 수 있다. 5.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협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서, 전자상거래 업계조직, 전자상거래 경영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시장관리체계 형성 사업을 추진한다. 6. 전자상거래 업계조직은 본 조직의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를 전개하고 업계규법을 수립 및 완비하며 업계의 신용을 수립하고 업계 내 경영자가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감독하고 유도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1.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自然人), 법인과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독립적인 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알선,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지칭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개인이 자가생산한 농부산물·가내수공업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본인의 특기를 이용하여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주체등기가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후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신청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병안전·재산안전 요구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종이 영수증 또는 전자 영수증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증표를 발행하여 한다. 전자 영수증 및 종이 영수증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영업집조 정보, 그의 경영업무에 관한 행정허가 정보,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공시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사업을 스스로 종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30일 전부터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적이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거래, 구매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관심사·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파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끼워파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묵시적 선택사항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속하였거나 약정한 방식, 기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 운송 과정의 리스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가 별도의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방식과 반환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신청이 보증금 반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그의 기술적 우위, 관련 업계에 대한 통제력 및 해당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기타 경영자의 거래의존도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 정보 조회·정정·삭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용자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정보를 정정·삭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속하여 보관하기로 쌍방이 약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유관 주관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자상거래 데이터·정보의 제출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응당히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출한 데이터·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중의 개인정보, 사생활 및 상업비밀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종사함에 있어 수출입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신청한 경영자에게 그의 신분·주소지·연락방식·행정허가 등 진실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확인·등기 절차를 거친 후 등기기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경영 이용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절(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영자에게는 법에 따라 등기 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협조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춰 응당히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영자를 위하여 등기상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이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이버 보안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사이버 보안 사건 긴급대비책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이버 보안 사건 발생 시 즉시 긴급대비책을 가동하여 해당 구제 조치를 취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온전성·비밀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는 거래완성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플랫폼 가입·탈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자 및 소비자가 편리하고 온전하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을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각방이 적시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은 실시되기 7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개정내용을 수락할 수 없어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탈퇴를 저지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정 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거래규칙 및 기술 등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플랫폼 내 경영자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영구정지 등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그의 플랫폼에서 자체운영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자체운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개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자체운영 표시가 된 업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상품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1. 전자사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 또는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자격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신용평가 규칙을 공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위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그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판매량·신용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노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로부터 권리 침해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내용을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가 확대분분에 대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통보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가해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으로 사실이 왜곡된 통보를 발송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2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플랫폼 내 경영자는 통보내용을 전달받은 후 권리침해 행위 부재 성명문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성명문에는 권리침해 행위의 부재를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문을 제출받은 후 권리 침해 통보를 발송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해당 성명문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유관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자산권 권리자에게 성명문을 전달한 후 15일 내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기(旣) 신고·제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이미 취한 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이 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통보, 성명문 및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2.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했어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또는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침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저장·물류·지급결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호가집중·시장조성자 등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전자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전자상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은 이 장(章)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자동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전자상거래에서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발표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가 청약의 요건에 부합되고 이용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문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한 경우 그 계약이 성립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표준약관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이 불성립된다는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준약관 등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계약체결 절차, 주의사항, 내려받는 방법 등 사항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편리하고 온전하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가 주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이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택배물류의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화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이 서비스 제공인 경우 생성된 전자증빙 또는 실물증빙에 기재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상기 증빙에 시점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된 시점이 실제 서비스 제공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계약 목적물을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 계약 목적물이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도착하였고 검색·식별이 가능해진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인도의 방식·시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1.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택배물류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택배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약속한 서비스 규범과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 인도 시 수화인에게 면전에서 택배물을 검사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타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수화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료의 감량화와 재이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대금 대리수령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전자지급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기능, 이용방법, 주의사항, 관련 리스크와 수수료 기준 등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지급결제 명령의 온전성, 일치성, 추적·감사 가능성, 변조 불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장부 검산 서비스와 최근 3년간의 거래기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국가의 결제안전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응당히 배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지급결제 명령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급결제 명령에 포함된 금액, 수취인 등 제반 정보에 오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결제 명령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결제 오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기   1.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지급결제 완성 후 지체없이 약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확한 지급결제 확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거래 비밀번호, 전자서명 데이터 등 보안 수단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보안 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도용당하였거나 수권 없이 지급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권 없이 이뤄진 지급결제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권 없이 지급결제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수권이 결여된 지급명령을 발견하였거나 이용자로부터 수권이 결여된 지급명령임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1. 국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한 상품·서비스 품질 보증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권익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 쌍방은 소비자권익보증금의 적립액수, 관리, 사용 및 봔환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배상금 선지급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배상금 선지급 후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편리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제보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신고·제보 방식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제보 사항을 지체없이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분쟁은 협상·화해, 소비자조직·업계협회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에 조정 신청, 유관부서에 신고, 중재 신청, 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플랫폼 내 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시계약 및 거래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기 자료를 분실, 위조, 변조, 소각, 은닉하였거나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인민법원·중재기구 또는 유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온라인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분쟁해결 규칙을 제정 및 공시하여 자발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상거래의 촉진**   1. 국무원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규획에 포함시키고 과학적·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2. 국무원과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친환경적 포장·저장·운송 지원·추진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의 친환경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3. 국가는 전자상거래 기초시설 및 물류망 구축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통계제도를 완비하며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수립을 강화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 각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응용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와 각 산업의 융합적 발전을 지원한다. 5. 국가는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 분야에서의 인터넷 기술 응용을 촉진시키며 다양한 사회 자원이 협력을 강화하여 농촌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정밀화 빈곤구조 사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6.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며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개발·응용을 권장하고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적법하고 질서있는 자유 유통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공공데이터 공유 매커니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적법한 이용을 촉진시킨다.   1.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평가기구가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2. 국가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춘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 각 단계의 원활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등이 다국적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저장·물류, 통관, 검사·검역신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형·초소형 기업이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1. 국가수출입관리부서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세관신고, 세금납부, 검사·검역 등 단계의 종합서비스 및 감독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감독관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정보공유, 감독관리 상호인정, 법 집행 상호협조를 실현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서비스 및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서류에 의거하여 국가수출입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국가는 기타 국가·지역과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며 전자서명·전자신분 등의 국제 상호인정을 촉진시킨다.   국가는 기타 국가·지역과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제6장 법률책임**   1.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어기고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거나 이 법 제25조에 규정된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이 법 제46조의 규정을 어기고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경우 이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영업집조 정보, 행정허가 정보,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전자상거래 사업 종료에 관한 정보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상품·서비스를 끼워 판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 제21조의 규정을 어기고 보증금 반환방식과 반환절차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법률·행정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제30조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사이버 보안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휴업정돈 명령을 내리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5. 이 법 제27조에 규정한 확인·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 법 제28조의 규정을 어기고 시장감독관리부서, 세무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이 법 제29조의 규정을 어기고 법 위반에 대한 필요한 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이 법 제31조에 규정한 상품·서비스 정보, 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을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시간에 맞춰 개정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탈퇴를 저지하는 경우; 4. 현저한 방식으로 자체운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개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평가를 무단 삭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상품·서비스를 노출시킴에 있어 이 법 제40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거래, 거래가격 또는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이 법 제38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자질·자격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고 5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이 법 제42조, 제45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지적재산권 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신병안전·재산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거나 허위 상업홍보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실시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행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 소비자 권익 침해 등 행위를 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에 규정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6.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인력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책 이행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사생활 및 상업비밀을 누설·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7. 이 법에 대한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2018年8月3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电子商务经营者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节　电子商务平台经营者  　第三章　电子商务合同的订立与履行  　第四章　电子商务争议解决  　第五章　电子商务促进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障电子商务各方主体的合法权益，规范电子商务行为，维护市场秩序，促进电子商务持续健康发展，制定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电子商务活动，适用本法。  　　本法所称电子商务，是指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  　　法律、行政法规对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有规定的，适用其规定。金融类产品和服务，利用信息网络提供新闻信息、音视频节目、出版以及文化产品等内容方面的服务，不适用本法。  　　第三条　国家鼓励发展电子商务新业态，创新商业模式，促进电子商务技术研发和推广应用，推进电子商务诚信体系建设，营造有利于电子商务创新发展的市场环境，充分发挥电子商务在推动高质量发展、满足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构建开放型经济方面的重要作用。  　　第四条　国家平等对待线上线下商务活动，促进线上线下融合发展，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不得采取歧视性的政策措施，不得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市场竞争。  　　第五条　电子商务经营者从事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公平参与市场竞争，履行消费者权益保护、环境保护、知识产权保护、网络安全与个人信息保护等方面的义务，承担产品和服务质量责任，接受政府和社会的监督。  　　第六条　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电子商务发展促进、监督管理等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确定本行政区域内电子商务的部门职责划分。  　　第七条　国家建立符合电子商务特点的协同管理体系，推动形成有关部门、电子商务行业组织、电子商务经营者、消费者等共同参与的电子商务市场治理体系。  　　第八条　电子商务行业组织按照本组织章程开展行业自律，建立健全行业规范，推动行业诚信建设，监督、引导本行业经营者公平参与市场竞争。  第二章　电子商务经营者  第一节　一般规定  　　第九条　本法所称电子商务经营者，是指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从事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包括电子商务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以及通过自建网站、其他网络服务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电子商务经营者。  　　本法所称电子商务平台经营者，是指在电子商务中为交易双方或者多方提供网络经营场所、交易撮合、信息发布等服务，供交易双方或者多方独立开展交易活动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  　　本法所称平台内经营者，是指通过电子商务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电子商务经营者。  　　第十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但是，个人销售自产农副产品、家庭手工业产品，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和零星小额交易活动，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不需要进行登记的除外。  　　第十一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并依法享受税收优惠。  　　依照前条规定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的电子商务经营者在首次纳税义务发生后，应当依照税收征收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办理税务登记，并如实申报纳税。  　　第十二条　电子商务经营者从事经营活动，依法需要取得相关行政许可的，应当依法取得行政许可。  　　第十三条　电子商务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应当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和环境保护要求，不得销售或者提供法律、行政法规禁止交易的商品或者服务。  　　第十四条　电子商务经营者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应当依法出具纸质发票或者电子发票等购货凭证或者服务单据。电子发票与纸质发票具有同等法律效力。  　　第十五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在其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营业执照信息、与其经营业务有关的行政许可信息、属于依照本法第十条规定的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情形等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  　　前款规定的信息发生变更的，电子商务经营者应当及时更新公示信息。  　　第十六条　电子商务经营者自行终止从事电子商务的，应当提前三十日在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有关信息。  　　第十七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全面、真实、准确、及时地披露商品或者服务信息，保障消费者的知情权和选择权。电子商务经营者不得以虚构交易、编造用户评价等方式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第十八条　电子商务经营者根据消费者的兴趣爱好、消费习惯等特征向其提供商品或者服务的搜索结果的，应当同时向该消费者提供不针对其个人特征的选项，尊重和平等保护消费者合法权益。  　　电子商务经营者向消费者发送广告的，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有关规定。  　　第十九条　电子商务经营者搭售商品或者服务，应当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不得将搭售商品或者服务作为默认同意的选项。  　　第二十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按照承诺或者与消费者约定的方式、时限向消费者交付商品或者服务，并承担商品运输中的风险和责任。但是，消费者另行选择快递物流服务提供者的除外。  　　第二十一条　电子商务经营者按照约定向消费者收取押金的，应当明示押金退还的方式、程序，不得对押金退还设置不合理条件。消费者申请退还押金，符合押金退还条件的，电子商务经营者应当及时退还。  　　第二十二条　电子商务经营者因其技术优势、用户数量、对相关行业的控制能力以及其他经营者对该电子商务经营者在交易上的依赖程度等因素而具有市场支配地位的，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  　　第二十三条　电子商务经营者收集、使用其用户的个人信息，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有关个人信息保护的规定。  　　第二十四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明示用户信息查询、更正、删除以及用户注销的方式、程序，不得对用户信息查询、更正、删除以及用户注销设置不合理条件。  　　电子商务经营者收到用户信息查询或者更正、删除的申请的，应当在核实身份后及时提供查询或者更正、删除用户信息。用户注销的，电子商务经营者应当立即删除该用户的信息；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双方约定保存的，依照其规定。  　　第二十五条　有关主管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要求电子商务经营者提供有关电子商务数据信息的，电子商务经营者应当提供。有关主管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保护电子商务经营者提供的数据信息的安全，并对其中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严格保密，不得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二十六条　电子商务经营者从事跨境电子商务，应当遵守进出口监督管理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  第二节　电子商务平台经营者  　　第二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要求申请进入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者提交其身份、地址、联系方式、行政许可等真实信息，进行核验、登记，建立登记档案，并定期核验更新。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为进入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非经营用户提供服务，应当遵守本节有关规定。  　　第二十八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按照规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的身份信息，提示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依法办理登记，并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针对电子商务的特点，为应当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办理登记提供便利。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依照税收征收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税务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的身份信息和与纳税有关的信息，并应当提示依照本法第十条规定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的电子商务经营者依照本法第十一条第二款的规定办理税务登记。  　　第二十九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发现平台内的商品或者服务信息存在违反本法第十二条、第十三条规定情形的，应当依法采取必要的处置措施，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三十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证其网络安全、稳定运行，防范网络违法犯罪活动，有效应对网络安全事件，保障电子商务交易安全。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发生网络安全事件时，应当立即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补救措施，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三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记录、保存平台上发布的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并确保信息的完整性、保密性、可用性。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保存时间自交易完成之日起不少于三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二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制定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明确进入和退出平台、商品和服务质量保障、消费者权益保护、个人信息保护等方面的权利和义务。  　　第三十三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在其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并保证经营者和消费者能够便利、完整地阅览和下载。  　　第三十四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修改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应当在其首页显著位置公开征求意见，采取合理措施确保有关各方能够及时充分表达意见。修改内容应当至少在实施前七日予以公示。  　　平台内经营者不接受修改内容，要求退出平台的，电子商务平台经营者不得阻止，并按照修改前的服务协议和交易规则承担相关责任。  　　第三十五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不得利用服务协议、交易规则以及技术等手段，对平台内经营者在平台内的交易、交易价格以及与其他经营者的交易等进行不合理限制或者附加不合理条件，或者向平台内经营者收取不合理费用。  　　第三十六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依据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对平台内经营者违反法律、法规的行为实施警示、暂停或者终止服务等措施的，应当及时公示。  　　第三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在其平台上开展自营业务的，应当以显著方式区分标记自营业务和平台内经营者开展的业务，不得误导消费者。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其标记为自营的业务依法承担商品销售者或者服务提供者的民事责任。  　　第三十八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平台内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或者有其他侵害消费者合法权益行为，未采取必要措施的，依法与该平台内经营者承担连带责任。  　　对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或者服务，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平台内经营者的资质资格未尽到审核义务，或者对消费者未尽到安全保障义务，造成消费者损害的，依法承担相应的责任。  　　第三十九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建立健全信用评价制度，公示信用评价规则，为消费者提供对平台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进行评价的途径。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不得删除消费者对其平台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的评价。  　　第四十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根据商品或者服务的价格、销量、信用等以多种方式向消费者显示商品或者服务的搜索结果；对于竞价排名的商品或者服务，应当显著标明“广告”。  　　第四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建立知识产权保护规则，与知识产权权利人加强合作，依法保护知识产权。  　　第四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认为其知识产权受到侵害的，有权通知电子商务平台经营者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终止交易和服务等必要措施。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据。  　　电子商务平台经营者接到通知后，应当及时采取必要措施，并将该通知转送平台内经营者；未及时采取必要措施的，对损害的扩大部分与平台内经营者承担连带责任。  　　因通知错误造成平台内经营者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恶意发出错误通知，造成平台内经营者损失的，加倍承担赔偿责任。  　　第四十三条　平台内经营者接到转送的通知后，可以向电子商务平台经营者提交不存在侵权行为的声明。声明应当包括不存在侵权行为的初步证据。  　　电子商务平台经营者接到声明后，应当将该声明转送发出通知的知识产权权利人，并告知其可以向有关主管部门投诉或者向人民法院起诉。电子商务平台经营者在转送声明到达知识产权权利人后十五日内，未收到权利人已经投诉或者起诉通知的，应当及时终止所采取的措施。  　　第四十四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及时公示收到的本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规定的通知、声明及处理结果。  　　第四十五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平台内经营者侵犯知识产权的，应当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终止交易和服务等必要措施；未采取必要措施的，与侵权人承担连带责任。  　　第四十六条　除本法第九条第二款规定的服务外，电子商务平台经营者可以按照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为经营者之间的电子商务提供仓储、物流、支付结算、交收等服务。电子商务平台经营者为经营者之间的电子商务提供服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不得采取集中竞价、做市商等集中交易方式进行交易，不得进行标准化合约交易。  第三章　电子商务合同的订立与履行  　　第四十七条　电子商务当事人订立和履行合同，适用本章和《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等法律的规定。  　　第四十八条　电子商务当事人使用自动信息系统订立或者履行合同的行为对使用该系统的当事人具有法律效力。  　　在电子商务中推定当事人具有相应的民事行为能力。但是，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四十九条　电子商务经营者发布的商品或者服务信息符合要约条件的，用户选择该商品或者服务并提交订单成功，合同成立。当事人另有约定的，从其约定。  　　电子商务经营者不得以格式条款等方式约定消费者支付价款后合同不成立；格式条款等含有该内容的，其内容无效。  　　第五十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清晰、全面、明确地告知用户订立合同的步骤、注意事项、下载方法等事项，并保证用户能够便利、完整地阅览和下载。  　　电子商务经营者应当保证用户在提交订单前可以更正输入错误。  　　第五十一条　合同标的为交付商品并采用快递物流方式交付的，收货人签收时间为交付时间。合同标的为提供服务的，生成的电子凭证或者实物凭证中载明的时间为交付时间；前述凭证没有载明时间或者载明时间与实际提供服务时间不一致的，实际提供服务的时间为交付时间。  　　合同标的为采用在线传输方式交付的，合同标的进入对方当事人指定的特定系统并且能够检索识别的时间为交付时间。  　　合同当事人对交付方式、交付时间另有约定的，从其约定。  　　第五十二条　电子商务当事人可以约定采用快递物流方式交付商品。  　　快递物流服务提供者为电子商务提供快递物流服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并应当符合承诺的服务规范和时限。快递物流服务提供者在交付商品时，应当提示收货人当面查验；交由他人代收的，应当经收货人同意。  　　快递物流服务提供者应当按照规定使用环保包装材料，实现包装材料的减量化和再利用。  　　快递物流服务提供者在提供快递物流服务的同时，可以接受电子商务经营者的委托提供代收货款服务。  　　第五十三条　电子商务当事人可以约定采用电子支付方式支付价款。  　　电子支付服务提供者为电子商务提供电子支付服务，应当遵守国家规定，告知用户电子支付服务的功能、使用方法、注意事项、相关风险和收费标准等事项，不得附加不合理交易条件。电子支付服务提供者应当确保电子支付指令的完整性、一致性、可跟踪稽核和不可篡改。  　　电子支付服务提供者应当向用户免费提供对账服务以及最近三年的交易记录。  　　第五十四条　电子支付服务提供者提供电子支付服务不符合国家有关支付安全管理要求，造成用户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五十五条　用户在发出支付指令前，应当核对支付指令所包含的金额、收款人等完整信息。  　　支付指令发生错误的，电子支付服务提供者应当及时查找原因，并采取相关措施予以纠正。造成用户损失的，电子支付服务提供者应当承担赔偿责任，但能够证明支付错误非自身原因造成的除外。  　　第五十六条　电子支付服务提供者完成电子支付后，应当及时准确地向用户提供符合约定方式的确认支付的信息。  　　第五十七条　用户应当妥善保管交易密码、电子签名数据等安全工具。用户发现安全工具遗失、被盗用或者未经授权的支付的，应当及时通知电子支付服务提供者。  　　未经授权的支付造成的损失，由电子支付服务提供者承担；电子支付服务提供者能够证明未经授权的支付是因用户的过错造成的，不承担责任。  　　电子支付服务提供者发现支付指令未经授权，或者收到用户支付指令未经授权的通知时，应当立即采取措施防止损失扩大。电子支付服务提供者未及时采取措施导致损失扩大的，对损失扩大部分承担责任。  第四章　电子商务争议解决  　　第五十八条　国家鼓励电子商务平台经营者建立有利于电子商务发展和消费者权益保护的商品、服务质量担保机制。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与平台内经营者协议设立消费者权益保证金的，双方应当就消费者权益保证金的提取数额、管理、使用和退还办法等作出明确约定。  　　消费者要求电子商务平台经营者承担先行赔偿责任以及电子商务平台经营者赔偿后向平台内经营者的追偿，适用《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的有关规定。  　　第五十九条　电子商务经营者应当建立便捷、有效的投诉、举报机制，公开投诉、举报方式等信息，及时受理并处理投诉、举报。  　　第六十条　电子商务争议可以通过协商和解，请求消费者组织、行业协会或者其他依法成立的调解组织调解，向有关部门投诉，提请仲裁，或者提起诉讼等方式解决。  　　第六十一条　消费者在电子商务平台购买商品或者接受服务，与平台内经营者发生争议时，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积极协助消费者维护合法权益。  　　第六十二条　在电子商务争议处理中，电子商务经营者应当提供原始合同和交易记录。因电子商务经营者丢失、伪造、篡改、销毁、隐匿或者拒绝提供前述资料，致使人民法院、仲裁机构或者有关机关无法查明事实的，电子商务经营者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六十三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可以建立争议在线解决机制，制定并公示争议解决规则，根据自愿原则，公平、公正地解决当事人的争议。  第五章　电子商务促进  　　第六十四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电子商务发展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制定科学合理的产业政策，促进电子商务创新发展。  　　第六十五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支持、推动绿色包装、仓储、运输，促进电子商务绿色发展。  　　第六十六条　国家推动电子商务基础设施和物流网络建设，完善电子商务统计制度，加强电子商务标准体系建设。  　　第六十七条　国家推动电子商务在国民经济各个领域的应用，支持电子商务与各产业融合发展。  　　第六十八条　国家促进农业生产、加工、流通等环节的互联网技术应用，鼓励各类社会资源加强合作，促进农村电子商务发展，发挥电子商务在精准扶贫中的作用。  　　第六十九条　国家维护电子商务交易安全，保护电子商务用户信息，鼓励电子商务数据开发应用，保障电子商务数据依法有序自由流动。  　　国家采取措施推动建立公共数据共享机制，促进电子商务经营者依法利用公共数据。  　　第七十条　国家支持依法设立的信用评价机构开展电子商务信用评价，向社会提供电子商务信用评价服务。  　　第七十一条　国家促进跨境电子商务发展，建立健全适应跨境电子商务特点的海关、税收、进出境检验检疫、支付结算等管理制度，提高跨境电子商务各环节便利化水平，支持跨境电子商务平台经营者等为跨境电子商务提供仓储物流、报关、报检等服务。  　　国家支持小型微型企业从事跨境电子商务。  　　第七十二条　国家进出口管理部门应当推进跨境电子商务海关申报、纳税、检验检疫等环节的综合服务和监管体系建设，优化监管流程，推动实现信息共享、监管互认、执法互助，提高跨境电子商务服务和监管效率。跨境电子商务经营者可以凭电子单证向国家进出口管理部门办理有关手续。  　　第七十三条　国家推动建立与不同国家、地区之间跨境电子商务的交流合作，参与电子商务国际规则的制定，促进电子签名、电子身份等国际互认。  　　国家推动建立与不同国家、地区之间的跨境电子商务争议解决机制。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十四条　电子商务经营者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或者造成他人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七十五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第十三条规定，未取得相关行政许可从事经营活动，或者销售、提供法律、行政法规禁止交易的商品、服务，或者不履行本法第二十五条规定的信息提供义务，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四十六条规定，采取集中交易方式进行交易，或者进行标准化合约交易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七十六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对其中的电子商务平台经营者，依照本法第八十一条第一款的规定处罚：  　　（一）未在首页显著位置公示营业执照信息、行政许可信息、属于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情形等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的；  　　（二）未在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终止电子商务的有关信息的；  　　（三）未明示用户信息查询、更正、删除以及用户注销的方式、程序，或者对用户信息查询、更正、删除以及用户注销设置不合理条件的。  　　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违反前款规定的平台内经营者未采取必要措施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七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本法第十八条第一款规定提供搜索结果，或者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搭售商品、服务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八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本法第二十一条规定，未向消费者明示押金退还的方式、程序，对押金退还设置不合理条件，或者不及时退还押金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九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法律、行政法规有关个人信息保护的规定，或者不履行本法第三十条和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网络安全保障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八十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一）不履行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核验、登记义务的；  　　（二）不按照本法第二十八条规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税务部门报送有关信息的；  　　（三）不按照本法第二十九条规定对违法情形采取必要的处置措施，或者未向有关主管部门报告的；  　　（四）不履行本法第三十一条规定的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保存义务的。  　　法律、行政法规对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处罚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八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一）未在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平台服务协议、交易规则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的；  　　（二）修改交易规则未在首页显著位置公开征求意见，未按照规定的时间提前公示修改内容，或者阻止平台内经营者退出的；  　　（三）未以显著方式区分标记自营业务和平台内经营者开展的业务的；  　　（四）未为消费者提供对平台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进行评价的途径，或者擅自删除消费者的评价的。  　　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四十条规定，对竞价排名的商品或者服务未显著标明“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罚。  　　第八十二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对平台内经营者在平台内的交易、交易价格或者与其他经营者的交易等进行不合理限制或者附加不合理条件，或者向平台内经营者收取不合理费用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三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三十八条规定，对平台内经营者侵害消费者合法权益行为未采取必要措施，或者对平台内经营者未尽到资质资格审核义务，或者对消费者未尽到安全保障义务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四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四十二条、第四十五条规定，对平台内经营者实施侵犯知识产权行为未依法采取必要措施的，由有关知识产权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五条　电子商务经营者违反本法规定，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实施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等不正当竞争行为，滥用市场支配地位，或者实施侵犯知识产权、侵害消费者权益等行为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处罚。  　　第八十六条　电子商务经营者有本法规定的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记入信用档案，并予以公示。  　　第八十七条　依法负有电子商务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或者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在履行职责中所知悉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八十九条　本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 |